#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26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황정아

강유정 • 진선미 • 이기헌

정을호 • 이훈기 • 김남근

이용우 · 김용만 · 임광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 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 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 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		
	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		
	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		
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통합교육) ① ~ ⑤ (생	제21조(통합교육)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		
	합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